

노인학대의 이해 - 시설학대 편

Q 시설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 시설 내에서 돌봄과 보호를 실행하고 시설장 및 종사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방임, 유기하는 것을 말함

(2020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노인학대의 유형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를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 경제적 착취, 경제적 관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자기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보호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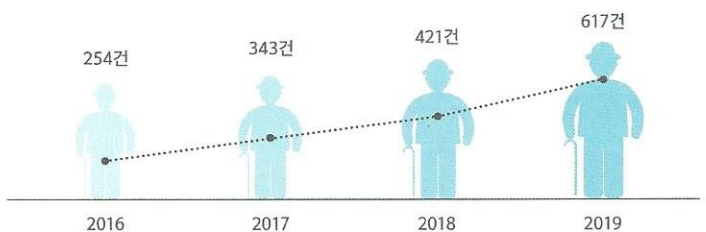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시설학대 현황 *2019 노인학대현황보고서(보건복지부·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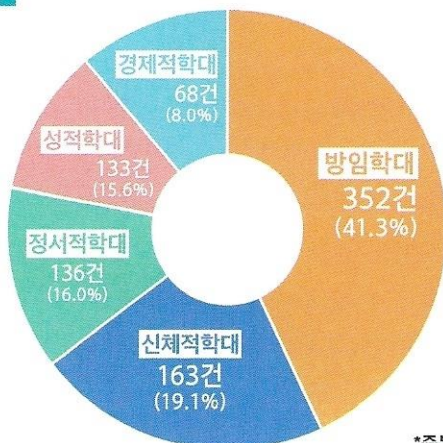
시설학대 건수 (2019년)

구 분	생활시설		이용시설	
	노인주거 복지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
총 617건	54건 8.7%	432건 70%	3건 0.3%	128건 21%

연도별 시설학대 건수 (2016-2019년)



시설학대 유형



*중복학대건수 포함

시설학대피해노인 치매정도

시설학대	구 분	치매의심	치매진단	계
총 617건 (100%)	생활시설	노인의료 복지시설 55명 8.9%	315명 51.1%	370명 60.0%
		노인주거 복지시설 4명 0.6%	41명 6.6%	45명 7.3%
	이용시설	노인여가 복지시설 -	1명 0.2%	1명 0.2%
		재가노인 복지시설 7명 1.1%	83명 13.5%	90명 14.6%
	계	66명 10.7%	440명 71.3%	506명 82%

신체적 학대

- 기저귀 케어 시 몸을 제압하거나 누른다.
- 체위 변경, 휠체어 이동 등의 과정에서 몸을 함부로 다룬다.
- 사전 동의 및 필요 절차 준수 없이 신체억제대를 사용한다.
- 의사의 처방없이 수면제, 신경안정제 등을 먹인다.

개입사례

가 신고접수 :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을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신고접수 됨.

나 조사 및 판정

요양보호사가 입소노인의 기저귀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노인의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하고, 피해노인의 몸 위에 올라타 양 팔을 무릎으로 밟아 제압한 사실을 확인함. 해당 요양보호사는 학대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관계자 면담을 통해 이같은 정황이 과거부터 이어져왔음을 확인함.

다 결과 : 행정처분 (지정취소)

요양원은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 결과 지정취소 처분은 마땅하다고 판결되어 폐업됨.

성적 학대

- 가림막을 설치하지 않은 채, 기저귀를 교체한다.
- 노인의 성적부위를 움켜쥐거나 더듬고 쓰다듬는다.
- 알몸 또는 일부를 벗겨놓은 상태로 목욕 대기를 하게 한다.

개입사례

가 신고접수 : 입소노인의 보호자가 면회과정에서 노인에게 손바닥 크기의 욕창이 발견한 사실을 확인하고 방임학대 의심 신고 함.

나 조사 및 판정

시설은 입소노인에게 발생한 욕창이 손바닥 크기로 발전하였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체위변경기록지까지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남. 또한 조사과정에서 입소노인 전원이 목욕 이동과정에서 알몸이 노출된 채로 가림막 없이 이동하는 장면들도 CCTV를 통해 확인됨, 목욕 전 과정에서 가림막 사용하지 않음.

다 결과 : 행정처분 (업무정지 3개월)

방임 학대

- 기저귀에 용변을 본 상태로 장시간 내버려둔다.
- 욕창 관리를 소홀히 하고 체위변경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다.
-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음식을 제공한다.
- 병원진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적절한 진료를 하지 않는다.

개입사례

가 신고접수 : 입소노인의 보호자가 '시설에서 골절진단을 받은 노인의 의료적 처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직접 신고함.

나 조사 및 판정 : 조사결과, 입소노인A는 야간에 화장실을 가던 중 낙상하여 골절 진단을 받게 됨. 요양원에서는 낙상 및 골절 진단 사실을 약 1주일 간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별 다른 의료적 처치 없이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한 사실이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됨.

다 결과 : 행정처분 (업무정지 3개월)

시설장은 보호자들이 금전(위로금)을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며, 절대 방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으나 행정심판 결과, 처분이 마땅하다고 인정. 최종 영업 정지 됨.

정서적 학대

- 요청을 못들은 체하고 대응하지 않는다.
(물이나 약을 달라, 화장실에 데려다 달라, 밥을 더 달라 등)
- 비난하거나 험담을 하며 창피를 주고 고성을 지르며 야단치듯 이야기 한다.
- 반말로 아기에게 하듯 구슬린다. (oo하면 사랑줄게 등)

개입사례

가 신고접수 : 요양병원에서 퇴사한 직원에 의해 '간병인들이 노인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신고접수 됨.

나 조사 및 판정 : 조사결과, 신체적 학대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진술이나 증거는 확인하지 못했으나, 간병인이 노인에게 수시로 '똥똥하다'고 놀리며, '똥을 많이 싸다'고 무안을 주는 등 노인의 수치심을 자극하는 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실을 확인함.

다 결과 : 관할 보건소의 행정지도 (간병인 위탁업체 엄중 경고, 책임자 문책,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경제적 학대

- 치매 노인의 재산(현금, 연금 등)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
(종교 시설의 현금 등)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물건 등을 구입하게 한다.

개입사례

가 신고접수 : 요양원 원장(목사)이 무연고 입소노인의 기초연금 통장에서 현금명목으로 인출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고 접수 됨.

나 조사 및 판정 : 해당 시설은 종사자들이 무연고 또는 보호자 방문이 드문 입소노인들의 기초연금 통장을 관리하면서 현금 및 공동 물품 구매 등의 비용으로 사용함.

다 결과 : 형사고발 및 지자체 감사 착수

시설학대 행정처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제29조(행정처분의기준)별표 2.

위반행위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신체적 학대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
성적 학대	지정취소	-	-
방임 학대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경제적 학대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지정취소
정서적 학대	업무정지 6개월	지정취소	-